



북경 이더거 잉크사업 유한책임공사 VS 까오신마오, 북경레전드 문화예술 유한공사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35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건번호	(2011)民监字第414号
판결 일자	2011. 11. 23.	판결 결과	재심신청 기각 (권리자 승)
1심 피고, 2심 상소인	1. 까오신마오(재심신청인), 2. 북경 레전드 문화예술 유한공사		
1심 원고, 2심 피상소인	북경 이더거 잉크 유한 책임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81조 제1관		
영업비밀	잉크 제조 방법		
키워드 (Keyword)	상업비밀(商业秘密), 국가기밀(国家秘密), 공지의 정보(公众知悉)		

02 사건 개요

까오신마오는 북경 이더거 잉크 유한 책임공사(이하 '이더거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잉크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 비밀을 습득한 후, 독립하여 북경 레전드 문화예술 유한공사(이하 '레전드 공사')라는 가족 공사를 설립하고 단기간에 고품질의 잉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더거 공사는 까오신마오와 레전드 공사를 상대로 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까오신마오는 이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원고(피상소인)



원심피고(상소인)

이더거 잉크는 국가 비밀기술 목록에 포함 되었으므로, 그 배합방법이 상업비밀에 속한다.

- 잉크 배합방법이 공중에 알려진 정보이며, 레전드 공사의 잉크와 동일하다는 증거가 없고, 레전드 공사의 잉크는 까오신마오가 독자 개발한 것이다.

04 판결 요지

일부, 이더거 공사의 잉크를 소개하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이더거 공사의 잉크 제조방법은 1996년 5월 북경시 국가 비밀기술 목록에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며, <국가 비밀 기술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단체에 대한 관리방법>에 의하여, 비밀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중에 알려진 정보가 아니다.

까오신마오는 이더거 공사에서 재직 당시 잉크 제조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레전드 공사의 잉크가 이더거 잉크와 다르다는 점이나, 까오신마오가 이를 독자 개발하였다는 사실도 증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까오신마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05 Key Point

중국 국가비밀기술목록에 열거된 상품은, 국가의 비밀에 속하고, 국가의 비밀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되며, 법정 순서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일정한 시간 내에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사항이다.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 ‘공중에 알려지지 아니한’이라는 요건은, 그 상품이 속한 영역이나 업계의 종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국가 비밀 기술 목록에 열거된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의 제조 방법은 상업비밀에 속한다.